

[2021.3.1.시행] [2020.8.25.개정]

# 유·초등교원 인사관리기준



전라북도정읍교육지원청

JEOLLABUKDO JEONGEUP OFFICE OF EDUCATION

<http://www.jbjue.kr/>

## < 목 차 >

<b>제 1장. 총 칙</b> .....	<b>1</b>
제 1조. 목 적 .....	1
제 2조. 적용 범위 .....	1
제 3조. 방 침 .....	1
<b>제 2장. 신규 임용</b> .....	<b>1</b>
제 4조. 임용 대상 .....	1
제 5조. 임용 배치 .....	2
<b>제 3장. 관내 전보</b> .....	<b>2</b>
제 6조. 전보 대상 .....	2
제 7조. 전보 기준 .....	2
제 8조. 교감 전보 .....	3
제 9조. 교사 전보 .....	3
제 10조. 벽지학교 전보 .....	4
제 11조. 특기교사 전보 .....	4
제 12조. 특수학급 교사 전보 .....	5
제 13조. 보건교사, 유치원교사, 사서교사, 전문상담교사 전보 .....	5
제 14조. 동점자 순위 결정 .....	5
제 15조. 서열부 작성 근거 .....	5
<b>부 칙</b> .....	<b>7</b>
(별표 I) .....	<b>9</b>
I. 경력점 .....	9
II. 근무성적(삭제) .....	11
III. 우대 가산점 .....	11
1. 훈장 및 표창 .....	11
2. 연구·시범·모델학교 근무 .....	11
3. 연구실적 .....	11
4. 교원 기능장(삭제) .....	11
5. 예체능 및 과학지도 .....	12
6. 효행교원 .....	12
7. 교육부지정 벽지학교 .....	12
8. 복식학급 담임교사 .....	12
9. 특수학급 및 통합학급 담임교사 .....	12
10. 교과전담 교사(삭제) .....	12
11. 영어 전보 .....	13
12. 유치원 동화구연대회 .....	13
13. 전산능력 보유(삭제) .....	12
14. 수업명장 인증(삭제) .....	13
15. 3자녀 이상 다자녀 양육 교원 .....	13
16. 지역교과서 개발위원(삭제) .....	13
17. 파견교사 .....	13
18. 1학년, 6학년 담임교사 .....	13
19. 특수교육지원센터 근무 .....	13
20. 정읍발명교육센터(미래창작공방 포함)전담 교사 .....	13
21. 보건교사 .....	13
(별표 II) .....	<b>14</b>
▣ 특기교사 선정기준 .....	<b>14</b>

# 유·초등교원 인사관리기준

## 제 1 장 총 칙

### 제 1 조(목적)

이 기준은 합리적이고 공정한 인사관리로 교원이 안정된 분위기에서 개인 및 집단의 창의성과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여 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인사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 2 조(적용 범위)

이 기준은 정읍교육지원청 관내에서 근무하고 있는 공립유치원 교원, 초등학교 교원 및 특수교사, 보건교사, 사서교사, 전문상담교사에 적용한다.<개정 2017.8.28.>

### 제 3 조(방침)

유·초등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인사 방침을 적용한다.

1. 교원의 인사관리는 인사관계 제 법규 및 [전라북도교육청](#) 인사관리기준에 의한다.
2. 교육실적을 중시하여 교육의 효율화를 도모한다. <개정 2018.8.28.>
3. 가급적 생활근거지와 희망지를 참작하여 생활안정을 기한다.
4. 장기근속으로 인한 침체성을 배제하며 학교의 균형적인 발전을 추구한다.
5. 전보서열에 의하여 전보하고 전보서열은 공개하여 신뢰받는 인사행정을 구현한다. <개정 2018.8.28.>
6. 본 인사관리기준의 개정사유가 있을 경우는 인사시행 이전에 개정하여 관내 전 교원에게 [안내](#)한다.
7. 이외의 사안이 발생할 경우 인사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신설 2017.8.28.>

## 제 2 장 신규임용

### 제 4 조(임용대상)

승진 및 신규교사로서 [정읍교육지원청](#)에 배정된 교감, 원감, 유치원교사, 초등교사, 특수교사, 보건교사, 사서교사, 전문상담교사 <개정 2017.8.28.>

## 제 5 조(임용배치)

신규교원은 다음 원칙에 의하여 배치한다.

1. 삭제 <개정 2017.8.28.>
2. 가급적 본인의 희망과 생활근거지를 고려하여 배치하되 경합이 될 경우에는 서열에 의한다.
3. 배치기준은 전보서열부에 따라 희망 순으로 배치한다. <개정 2017.8.28.>
4. 신규교사 비율이 단위학교 교사 수의 6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단, 학기 중 신규 임용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신설 2012.12.18.>

## 제 3 장 관내전보

### 제 6 조(전보 대상)

1. 동일교 5년(교육부지정 벽지학교 3년) 이상 근무자는 전보한다.  
(단, 동일교 근무 기간에 파견기간은 포함하고 모든 휴직기간은 제외)  
<신설 2020.8.25.>
2. 교(원)감과 교사의 관내전보 기본대상은 동일교 2년 이상 근무한 자로 한다.  
(단, 다음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7.8.28.>  
- 폐교 및 학급감축, 정원감축(과원조정 포함)으로 관내 전보된 교감과 교사는 6개월

### 제 7 조(전보 기준)

1. 관내전보 배치는 전보서열에 따라서 10희망까지 반영하여 배치한다. <개정 2018.8.28.>
2. 정읍시 외 전입자와 신규임용자는 본인의 희망과 생활근거지를 고려하여 배치하되, 충원이 필요한 곳에 배치한다. <개정 2017.8.28.>
3. 학교장은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교사를 교원정원의 10%이내에서 1년 동안 전보유예를 요청할 수 있으나 2명을 초과할 수 없으며, 혁신학교 만기 근무자는 2년이내에서 전보유예 요청할 수 있다. 전보유예교사 명부를 작성 비치한다. (단, 전보시 최근 5년까지의 부가점만 인정함) <개정 2017.8.28.>
  - 1) 근무성적이 양호하고 본인이 계속근무를 희망하는 자 (단 1년에 한함)
  - 2) 교감은 정년 잔여기간 1년 이하인 자, 교사는 정년 잔여기간 2년 미만인 자 (교사정원 10%에서 제외) <개정 2017.8.28.>
  - 3) 벽지학교 근무자는 유예할 수 없다. (단 벽지학교 3년 이상 근무자 전보시 최근 3년까지의 부가점만 인정함)
4. 학교장이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관내 교사의 전입을 요청할 수 있다. 단, 전입요청은 교원 정원의 5%(교사 수 산출시 소수점 이하는 절사) 이내

에서 단위 학교 장기근속자(동일교 만기)를 대상으로 하며 전임교사 명부를 작성 비치한다.

1) 단 벽지학교는 제외한다.

5. 초빙교사제를 실시할 수 있으며 세부적인 사항은 전라북도교육청 초빙교사 임용업무 세부 추진 계획에 의하여 시행한다.

1) 삭제 <개정 2017.8.28.>

2) 삭제 <개정 2017.8.28.>

3) 삭제 <개정 2017.8.28.>

## 제 8 조(교감 전보)

1. 본인의 희망과 학교장의 내신을 가급적 존중하여 전보한다.

단, 1)호에 해당하는 자는 학교장의 내신에 구애 없이 전보 조치할 수 있고,

2)호와 3)호는 인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전보 조치할 수 있다.

1) 징계를 받은 자

2) 직무 소홀로 민원을 야기 시킨 자

3) 당해 학교에 계속 근무하기 곤란한 자

2. 전보 희망자가 많아 경합이 될 경우에는 다음 항목에 의하여 전보한다.

1) 전보 서열 평정점

2) 삭제 <개정 2017.8.28.>

## 제 9 조(교사 전보)

1. 본인의 희망에 의하되 학교장의 내신을 가급적 존중하여 전보한다.

2. 교육의 정상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남교사만 있거나 여교사만 있는 학교에는 남·여 교사의 수를 고려하여 고루 배치할 수 있다. 다만, 세부 기준은 관내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한다. (교육부지정 벽지학교는 제외) <개정 2019.8.16.>

3. 삭제 <개정 2018.8.28.>

4. 과원교사의 전보는 학교장의 내신에 의한다.

5. 정원조정으로 부득이하게 전보된 자가 벽지학교 및 일반학교로 전입을 희망할 때에는 전임교의 재직 기간을 동일교 근무기간으로 합산하여 평정한다. <개정 2018.8.28.>

6. 다음 1)호에 해당하는 자는 학교장의 내신에 구애 없이 전보 조치할 수 있고,

2)호와 3)호는 인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전보 조치한다.

1) 징계를 받은 자

- 2) 직무에 소홀하고 민원을 야기 시킨 자
- 3) 당해 학교에서 계속 근무하기 곤란한 자
- 7. 삭제
- 8. 전보 배치기준을 다음과 같은 순위로 정한다. <개정 2018.8.28.>
  - 1) 1순위는 정읍관내 전보 희망자
  - 2) 2순위는 정읍 전입 희망자
  - 3) 3순위는 전주 만기자 서열부 등재자
  - 4) 4순위는 타시도 전입자
  - 5) 5순위는 신규 발령자
- 9. 부부교원과 직계존비속교원은 동일교에 배치하지 않는다.(단, 벽지학교는 예외로 한다.) <신설 2017.8.28.>
- 10. 복직교사 전보 배치기준은 다음과 같은 순위로 한다. <신설 2020.8.25.>
  - 1) 1순위는 동일교 근속년수 경력이 많은 자(현 소속교 실근무경력으로 하되 파견은 포함하고 모든 휴직기간 제외)
  - 2) 2순위는 임용 후 실근무경력이 많은 자(파견은 포함하고 모든 휴직기간 제외)
  - 3) 3순위는 생년월일이 빠른 자
- 11. 정읍발명교육센터(미래창작공방 포함) 파견교사가 파견기간 종료 후, 원소속교 복귀가 불가능할 경우 본인의 희망을 고려하여 벽지학교와 연구학교 외의 학교에 우선 전보한다. <신설 2020.8.25.>

## 제 10 조(벽지학교 전보)

- 1. '라'급지 교육부지정 벽지학교 : 수곡(1개교)
  -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경력점, 우대 가산점을 합산한 고득점자 순으로 남·여 구분 없이 전보서열에 의하여 전보한다. <개정 2017.8.28.>
- 2. 교육부지정 벽지학교 전입을 희망하는 경우 전보서열 평정기간은 동일교 상관없이 최근 5년으로 한다.(제6조 2항 참고) <신설 2020.8.25., 적용 2023.3.1.>

## 제 11 조(특기교사 전보)

- 1. 특기교사는 도교육청 특기교사 명부를 근거로 학교장의 요청에 의하여 인사위원회의 결의로 확정한다. <개정 2018.8.28.>
- 2. 특기교사로 전입한 교사가 2년 내 실적이 없을 때 학년말 인사에서 타교로 전보 조치할 수 있다.
- 3. 도교육청 체육특기교사 명부에 등재된 체육특기교사 중 전국규모대회에서 3위 이상 입상 실적이 있는 자(5개팀 이상 참가한 대회)는 5년간 전보유예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7.8.28.>

## 제 12 조(특수학급 교사 전보)

1. 특수학급이 있는 학교는 특수교육 전공교사를 우선 배치하되 서열에 의한다.  
<개정 2017.8.28.> <개정 2020.8.25.>
2. 삭제 <개정 2017.8.28.>
3. 삭제 <개정 2017.8.28.>
4. 특수학급의 감소로 과원 발생시 도교육청의 기준에 의한다. <신설 2017.8.28.>

## 제 13 조(보건교사, 유치원교사, 사서교사, 전문상담교사 전보)

1. 보건교사는 가급적 지역을 안배하여 배치하도록 한다.  
단, 벽지학교의 학생수가 보건교사 기 배치학교 중 학생수가 가장 적은 학교의 학생수보다 많을 경우 배치할 수 있다.
2. 보건교사 및 유치원교사, 사서교사, 전문상담교사의 전보는 초등학교 교사의 인사기준에 준한다. <개정 2017.8.28.>
3. 삭제 <개정 2020.8.25.>
4. 유치원 폐급 등에 따른 과원교사의 관내 전보는 동일교 재직 근무 기간만을 평정하여 전보한다. <개정 2020.8.25.>
5. 유치원 방과후과정 전담교사는 다음과 같은 순위로 한다. <개정 2020.8.25.>
  - 1) 1순위는 도교육청 배치기준
  - 2) 2순위는 방과후과정 학급수 많은 곳
  - 3) 3순위는 방과후과정 참여 원아수가 많은 곳
6. 보건교사의 정원이 줄어들 경우 해당 학년도의 학생수가 가장 적은 학교의 보건교사를 전보하여 배치한다. <2016. 3. 1. 적용>
7. 보건교사의 전보요인이 있을 경우 18학급이상 또는 70명 이상인 학교에 우선 배치할 수 있다.(단, 동일 조건일 경우 거점학교에 우선한다. 2017. 3. 1. 적용)

## 제 14 조(동점자 순위 결정)

1. 동점자 순위는 다음에 의한다.
  - 1) 삭제 <개정 2017.8.28.>
  - 2) 교육경력이 많은 자
  - 3) 생년월일이 빠른 자 <개정 2017.8.28.>

## 제 15 조(서열부 작성 근거)

1. 서열부 작성의 근거자료는 교육지원청에 비치 중인 인사기록카드(NEIS 인사기록 포함) 및 공무상의 기록에 의한다.

2. 우대 가산점은 학교장의 내신 서류에 의한다.
3. ‘별표 1’의 전보서열부 작성 평정기준에 의하여, 경력점, 학교급지별 가산점, 우대 가산점을 합산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작성한다. <신설 2017.8.28.>
4. 전보서열부는 남·여 별도로 작성할 수 있다. 다만, 세부 기준은 관내 인사(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한다. <신설 2017.8.28.>
5. 전보 서열부의 유효 기간은 1년으로 한다.(매년 3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말일까지) 다만, 교사의 전보 서열부는 3월 1일자에 한한다. <신설 2018.8.28.>

## 부 칙

제1조(시행일) : 본 기준은 200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 (삭제 2012.12.18.)

제3조 : '95.9.1 개교한 정읍수성초등학교를 다음과 같이 운영한다.

① 정읍수성초등학교에 근무하는 교사가 전보할 때 1년마다 0.25점을 1기 점수에 가산한다.(삭제 2012.12.18.)

제4조 :(삭제 2012.12.18.)

제5조 :(삭제 2011.3.1.)

\* 부칙 제2조, 제3조는 2003년 3월 1일 전입자부터는 적용하지 않는다.

부칙 제4조는 2005년 3월 1일 전입자부터는 적용하지 않는다.(신설 03.10.29)

부칙 제5조는 2005년 3월 1일 근무자부터 적용한다.(신설 04.12.9)

부 칙(2010.07.29.)

제1조(시행일)

본 기준은 201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1.07.19.)

제1조(시행일)

본 기준은 201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1.11.29.)

제1조(시행일)

본 기준은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2.12.18.)

제1조(시행일)

본 기준은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5.01.15.)

제1조(시행일)

본 기준은 2015년 1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03.01.)

제1조(시행일)

본 기준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7.08.28.)

제1조(시행일)

본 기준은 201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08.28.)

제1조(시행일)

본 기준은 2019년 3월 1일 인사부터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일괄 시행한다.

부 칙(2019.08.16.)

제1조(시행일)

본 기준은 2020년 3월 1일 인사부터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일괄 시행한다.

부 칙(2020.8.25.)

제1조(시행일)

본 기준은 2021년 3월 1일 인사부터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일괄 시행한다.

(별표 I)

I. 경력점

1. 경력평정기간은 동일교 평정 년수 최근 5년으로 하고 1기 및 2기로 나누어 1기는 평정시기로 부터 최근 2년, 2기는 1기전 3년으로 한다.

(‘94. 3. 1. 이후 전입 교사 적용)

1) 1기는 다음 학교 소재 급지별로 가산한다.

< 학교 소재 급지별 가산점 >

급지별	1	2	3	4	5	6
가산점	0.5	1.0	1.5	2.0	2.5	3.0
86. 3. 1 이후 학교명	정읍동 동 신 정읍서 정읍남 정읍북	내장, 정일 북면, 덕천 소성	영산, 대흥 정남, 태인 입암, 고부 신태인 신태인북	서신, 보성 두승, 운용 이평, 정우 칠보, 백암 수곡, 능교 산외, 화죽 화호, 용곽 (두월, 산내 장급, 종산)	신태인중앙 교암, 관청 영원, 오봉 감곡, 용동 대룡, 이평서 (산성)	남성, 도학 회룡, 보림 정읍신평
88. 3. 1 이후				용곽⇒6	이평서⇒6 대 룡⇒6	용곽, 대룡 이평서
90. 3. 1이후				능교⇒6		능교
91. 3. 1 이후			입암⇒4 고부⇒4	입암, 고부		
93. 3. 1 이후		소성⇒3	소성	화호⇒5	화호	
95. 3. 1 이후					회룡, 보림 정읍신평 대룡, 용곽 능교, 남성	회룡, 보림 정읍신평 5⇐대룡, 용곽 능교, 남성
95. 9. 1 이후	정읍수성					
96. 3. 1 이후					회룡, 보림 정읍 신평  ⇒ 대룡, 용곽   능교, 남성└	회룡, 보림 정읍신평 대룡, 용곽 능교, 남성
00. 4.11 이후	정읍연지유치원					
03. 9. 1 이후	정읍					
06. 3. 1 이후	한솔					
08. 3. 1 이후			교암 서신	3 ⇐ 서신 도학	3 ⇐ 교암 관청 ⇒ 6	4 ⇐ 도학 관청
15. 3. 1 이후	정읍 교육지원청					

2) 2기는 1년에 3점씩 계산한다.

3) 교육감지정 비농어촌 학교 (교육감지정 농어촌 이외 학교 : 2009.3.1.부터 적용) 근무교사 1기만 1년마다 0.5점씩 가산한다.

(단 2012.3.1전입자부터는 1기에 0.25점씩 가산하고 0.5점을 초과할 수 없다.)

4) 2008년 3월 1일자 학교 소재 급지가 변경된 학교의 가산점은 2008년 3월 1일자 전입교사 부터 적용한다.

**<아래 내용은 2016년 3월 1일 전임교사부터 적용>**

**I. 경력점**

1. 경력평정기간은 동일교 평정 년수 최근 5년으로 하고 1기 및 2기로 나누어 1기는 평정시기로 부터 최근 2년, 2기는 1기전 3년으로 한다. 단, 교육부지정 벽지학교 전입을 희망하는 경우 경력평정기간은 최근 5년으로 한다. <개정 2020.8.25.>
  - 1) 1기는 다음 학교 소재 급지별로 가산한다.

**< 학교 소재 급지별 가산점 >**

급지별 가산점	1 0.5	2 0.75	3 1.0	4 1.25
	동 신 정읍동 정읍서 정읍남 정읍북 정읍수성 정 읍 한 솔 정읍교육지원청	내 장 영 산 정 일 교 암 서 신 정읍연지유치원 (2017.3.1.부터 적용)	대 흥 소 성 신태인 고 부 백 암 보 성 산 의 수 곡 이 평 입 암 정 우 칠 보 감 곡 영 원 응 동 능 교 정 남 태 인 덕 천 북 면 도 학 관청(2019.2.28.폐교)	

- 2) 2기는 1년에 3점씩 계산한다.
- 3) 교육감지정 비농어촌 학교 (교육감지정 농어촌 이외 학교 : 2009.3.1.부터 적용) 근무교사 1기만 1년마다 0.5점씩 가산한다.  
 (단 2012.3.1전임자부터는 1기에 0.25점씩 가산하고 0.5점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8.8.28., 2019.2.28.까지 적용>  
 교육감 지정 비농어촌 학교(교육감지정 농어촌 이외 학교) 근무교사 1년마다 0.6점씩(월 0.05)가산한다. <신설 2018.8.28., 2019.3.1.부터 적용>
- 4) 교감미배치교는 지정급지에서 1단계 상향한다.(예, 3급지→4급지) <개정 2020.8.25.>
- 5) 보건교사는 소재 급지별 가산점을 역순으로 계산한다. <신설 2017.8.28.>, <개정 2018.8.28.>

II. 삭제 <개정 2017.8.28.>

III. 우대 가산점은 다음에 의하여 현임교 재직중 취득분만 적용한다. 다만 1항, 6항, 7항, 15항, 교육부지정 벽지학교 희망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0.8.25.>

1. 훈장 및 표창(최고 훈격 1개만 적용)

구 분	점 수	구 분	점 수
훈장 및 포장 모범공무원상	<u>3.5</u>	장관 총장	<u>2.0</u>
대통령표창	<u>3.0</u>	교육감, 학장	<u>1.5</u>
국무총리표창	<u>2.5</u>	교 육 장	<u>1.0</u>

(2018.3.1.부터 적용) <개정 2017.8.28.>

2. 연구·시범·모델학교 근무 (4점을 초과하지 못함)

교육부지정	도 지정	시지정 및 모델학교
<u>1년 1.5점</u>	<u>1년 1점</u>	<u>1년 0.5점</u>

※도교육청 지정 교육실습 협력학교: 1년에 0.4점(2005년 3월 1일 근무한 교원부터 적용) 단, 유치원 교사는 1년 1회에 0.2점, 2회 이상은 0.4점(2013년 3월 1일 근무자부터 적용) <신설 2012.12.18.> <개정 2017.8.28.>

3. 연구실적 (5점을 초과할 수 없음)

등급 \ 규모	전국대회	도대회
1	2.5	1.5
2	2.0	1.0
3	1.5	0.5

※ 1년 중 최고 입상 1개 대회만 인정

※ 공동작은 1/2 인정 <신설 2017.8.28.>

4. 삭제 <개정 2017.8.28.>

5. 예체능 및 과학지도 (5점을 초과할 수 없음)

구분 \ 등위		전국대회			도대회		
		1등	2등	3등	1등	2등	3등
예체능 과학	단체상	2.5	2.0	1.5	1.5	1.0	0.5
	개인상	2.0	1.5	1.0	1.0	0.5	

※ 1년 중 최고 입상 1개분만 인정(직접지도교사)

※ 예체능 및 과학영역 인정 범위

- ① 체육은 소년체전선발대회, 도단위 이상 체육회산하단체 주관 대회, 도교육청 주관대회 ('89.3.1 이후)
- ② 예능은 도교육청 및 교육부 주최 학생예능 실기경연대회 ('92.3.1 이후)
- ③ 과학은 도교육청 및 과학교육원 주최 각종 학생실기 경연대회('92.3.1이후) (단, 학생과학 발명품 경진 부문 '95.3.1이후) <개정 2017.8.28.>

※ 소년체전은 전라북도소년체육대회 및 전국소년체육대회에 한함.

- 단 지도학생중에 소속학교의 학생이 포함되어 있어야 인정함.(영재산출 물대회 참여는 예외로 함) <개정 2018.8.28., 2019.3.1.부터 적용>
- 체육지도는 1종목당 감독 1인으로 한다. <개정 2017.8.28.>

- 6. 효행교원 및 선행교원(1회에 한함) 시·군단위 이상 기관장의 수상자 0.5점 가산 <개정 2017.8.28.>
- 7. 교육부지정 벽지학교 희망자는 정읍시 계속 5년부터 1점을 가산점으로 평정하고 1년마다 0.4점 가산(5점을 초과할 수 없음) (개정 2015.6.1. , 적용 2017. 3. 1.)
- 8. 복식학급 담임교사는 1년에 교육부지정 벽지학교 0.5점, 기타학교 0.75점 가산 (2.5점을 초과할 수 없음)
- 9. 특수학급 및 통합학급 담임교사 1년에 0.5점씩 가산(2.5점을 초과할 수 없음) (월0.042점 '92. 3. 1부터 적용, 통합학급은 06. 3. 1부터 적용)
- 10. 삭제 <개정 2018.8.28., 2019.3.1.부터 적용>

11. 영어 전보 가산점 <개정 2017.8.28.>

TEPS 점수	TOEIC 점수	TOEFL 점수			전보 가산점
		PBT	CBT	IBT	
915 이상	960 이상	630 이상	283 이상	116 이상	1.50
872 이상	930 이상	620 이상	273 이상	111 이상	1.25
793 이상	875 이상	601 이상	257 이상	103 이상	1.00
710 이상	815 이상	580 이상	240 이상	95 이상	0.75
572 이상	700 이상	540 이상	217 이상	82 이상	0.50
508 이상	635 이상	517 이상	193 이상	70 이상	0.25

12. 유치원 동화구연대회 가산점 (3점을 초과할 수 없음)

등 급	1	2	3
가산점	1.5	1.0	0.5

13. 삭제

14. 삭제 <개정 2017.8.28.>

15. 3자녀 이상 다자녀 양육 교원에게 1점을 부여(1점을 초과할 수 없음, 2007.3.1.)<개정 2019.8.16.>

16. 삭제 <개정 2020.8.25.>

단, 2021.2.28.까지 취득한 점수는 전보시 1회에 한하여 가산점 인정

17. 파견교사는 1년에 0.5점을 가산하며 2.5점을 초과할 수 없음 (월0.042점, 2008년3월1일 근무자부터 적용)

18. 1학년 담임교사, 6학년 담임교사 1년에 0.25점(월0.021점) 점수 부여(2011년 3월 1일 근무자부터 적용, 1학년 담임교사는 2019년 3월 1일 근무자부터 적용)(개정 2015.1.15. , 적용 2015. 3. 1.) <개정 2018.8.28.>

19. 특수교육지원센터에 근무하는 특수교사 1년에 0.75점 부여(월 0.0625점, 2015년 3월 1일 근무자부터 적용)(신설 2012.12.18.)(개정 2015.1.15. 적용 2015. 3. 1.)

20. 정읍발명교육센터(미래창작공방 포함) 운영 전담 교사 1년에 1.2점 부여(월 0.1점) (2018년 3월 1일 근무자부터 적용) <개정 2017.8.28.> <개정 2020.8.25.>

21. 30학급이상 규모학교에 근무하는 보건교사는 1년에 2점(월 0.167) 부여 (2019년 3월 1일 근무자부터 적용) <신설 2018.8.28.>

(별표 II)

▣ 특기교사 선정기준

구분		특 기 정 도	활 동 실 적
예 능	음악 · 가창 · 기악	1.음악과 도 기능장 취득자  2.개인발표회를 개최한 자	1.학생을 직접 지도(특활, 수련)하여 도대회이상 대회에서 우수상 이상 실적이 있는자 2.현장에서 2년 이상 수련부를 조직 직접지도하여 실적을 인정받는 자 3.도지정 이상 연구학교 근무중 공개자 (도수업 연구대회 포함)
	미술 · 회화 · 서예	1.기능장(도회화, 서예)취득자  2.개인전 개최한 자	1.학생을 직접 지도하여(특활수련부)도대회 이상 공인대회에서 우수상 입상 실적이 있는자 2.현장에서 2년이상 수련부를 조직 직접 지도하여 지도기능을 인정받은 자
체 육	무 용	1.개인 발표회를 개최한 자  2.실기기능이 있고 안무능력을 갖춘자로 인정받은 자	1.학생을 직접 지도하여 도대회 이상 공인대회에서 우수상이상 입상실적이 있는자 2.현장에서 2년이상 수련부를 조직 직접 지도하여 그 기능을 인정받은 자
	체 육	1.소년체전 도대표 선수지도 경력교사  2.경기종목 심판자격 취득자	1.전국소년체전 전북대표팀 육성 실적이 있는 자 2.전라북도 대회에 출전, 우수상 이상 입상 실적이 있는 자 3.수기당에 파견되어 직접 학생을 지도한 경력이 있는 자
컴퓨터		1.컴퓨터 관련자격 소지자 2.1년 이상 컴퓨터 학원수료자 3.전산처리 자격소지자 (전문대졸)	1.학생을 직접 지도하여 각종 대회(도대회 이상)에서 입상한 실적을 올린 자 2.수련부를 조직 2년이상 직접 지도한 경력이 있고, 능력을 인정받는 자